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3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9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사용료 등 반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에게 대해 대칭적으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(안 제7조제2항)

나.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명시(안 제8조)

다. 제명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청소년 기본법」

2)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8. 29. ~ 9. 18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)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(2024. 9. 24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조례에서”를 “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”를 “납부받은 후”로, “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”를 “경우,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「소비자분쟁해결 기준」을 따른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며,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18조 및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(이하 “<u>청소년시설</u>”이라 한다)”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등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<u>조례에서</u>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.</p> <p>제7조(사용료 등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<u>납부 받은 후</u> <u>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</u>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18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다른 법령</u> ----- <u>이나 조례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사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납부받은 후</u> ----- ----- ----- <u>경</u> ----- <u>우,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</u></p>

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.

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른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「청소년 기본법」  
제3조제8호-----  
-----.  
② -----  
----- 경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며, -----  
-----  
-----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정행복지원과 강지화
연 락 처	02-3153-8983